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9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\*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

\*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(임기제 교육연구사) 정원 증원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증 154명 (7,722명 → 7,876명)

- 교육전문직원  
: 증 154명 (588명 → 742명)

나.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특정직 정원 조정: 증 154명  
-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증 154명

## 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(2024. 10. 5. ~ 2024. 10. 8.): 의견 없음

- 단축사유: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1항 단서

나.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협의: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

라. 첨부자료

- 1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(안): 【별첨 1】

- 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【별첨 2】
- 3) 비용추계서: 【별첨 3】
- 4)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【별첨 4】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제외통보 확인서 【별첨 5】
- 6) 학생인권영향평가: 검토 의견서 【별첨 6】
- 7) 관계법규: 【별첨 7】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## 【별첨 1】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722”을 “7,876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588”을  
“742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<b>총계</b>	<b>7,876</b>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
교육감	1		1		
<b>일반직 계</b>	<b>7,125</b>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44		33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0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
연구사 소계	14				
<b>별정직 계</b>	<b>8</b>				
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<b>특정직 계</b>	<b>742</b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691				

【별첨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,722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교육전문직원 정원 <u>588명</u></p>		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 <u>7,876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742명</u></p>					
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	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
구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총계	7,722					총계	7,876				
정무직 계	1					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	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7,125					일반직 계	7,125				
2·3급	1		1			2·3급	1		1		
3급	9		9			3급	9		9		
3·4급	3		3			3·4급	3		3		
4급	44		33	11		4급	44		33	11	
4·5급	7		7			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0					5급 이하 소계	7,040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	전문경력관 소계	7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 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 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연구사 소계	14					연구사 소계	14				
<b>별정직 계</b>	<b>8</b>					<b>별정직 계</b>	<b>8</b>				
4급상당	1		1			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<b>특정직 계</b>	<b>588</b>					<b>특정직 계</b>	<b>742</b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51		29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	537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	<b>691</b>				

**【별첨 3】**

**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154명\* 증원,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

\* 임기제 교육연구사(늘봄지원실장) 154명(초등 149명, 특수 5명)

**2. 비용추계의 전제**

특정직 154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 인건비 추계

**3. 비용추계의 결과**

(단위: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입	-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인건비	18,526,046	19,081,827	19,654,282	20,243,910	20,851,227	98,357,292
	소계(b)	18,526,046	19,081,827	19,654,282	20,243,910	20,851,227	98,357,292
□ 총 비용(a-b)		18,526,046	19,081,827	19,654,282	20,243,910	20,851,227	98,357,292

※ 재원: 보통교부금

※ 비용추계 단가: 2025년 총액인건비 전문직 단가(120,299천원)

※ 비용추계 방법(154명 기준 5개년도 추계)

- 1차년도: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

- 2차년도~5차년도: 전년도 인건비 x 처우개선을 3% 적용(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)

※ 향후 단가 및 처우개선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

**4. 재원조달 방안**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18,526,046	19,081,827	19,654,282	20,243,910	20,851,227	98,357,292
시비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합계		18,526,046	19,081,827	19,654,282	20,243,910	20,851,227	98,357,292

【별첨 4】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평가담당	감사관	장학사	황은영
입안주관부서	행정관리담당관	통보일	2024. 10. 8.
관련 조문	검토 결과		조치사항
안 별표 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</li><li>- 동 개정(안)은 늘봄지원실장(임기제 교육연구사) 배치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한 별표 3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</li><li>- 따라서, 동 개정(안)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정원 관련 규정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</li></ul>		“원안동의”

【별첨 5】

##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관리번호	2024A서울교육026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행정관리담당관		
	담당자명	전은산	전화번호	02-2282-8644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
	담당자명	여인진	전화번호	02-399-9546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4년 10월 07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4년 10월 07일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10월 07일

【별첨 6】

**자치법규 · 단위사업**  
**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**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(일부개정)					
담당부서	행정관리담당관	담당자	직급	주무관	성명	전은산 (02-2282-8644)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	마한열(위원장), 김상일, 이민철, 이정현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제2조 제3조 별표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개정안은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(임기제 교육연구사)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됨.</li> <li>- 본 개정안은 특정직 정원 154명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에 동의하나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증원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한 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맡는 상황이 우려됨.</li> <li>-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또는 순환 배치 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.</li> <li>- 늘봄지원실장의 배치 기준 및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.</li> <li>- 아울러, 조례안 개정 이후 늘봄학교 운영 인력(늘봄지원실장 등)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함.</li> </ul>					원안 동의 (개선권고)

## 【별첨 7】 관계법규

#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0.4.7] [대통령령 제30601호, 2020.4.7., 일부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5. 8.>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5.8., 201

4.6.11., 2016.12.13.>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 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 3.5.8., 2013.12.4., 2018.2.27.>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 육전문직원의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 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8.>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